

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(나급, 건축안전분야)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금천구(일반, 시간선택제)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4년 3월 20일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부서	담당 직무내용
건축안전분야	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	2명	임용일로부터 1년	건축과	-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등 노후 건축물 안전 업무 -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관리 등 지진 안전 업무 - 드라이비트 외벽시공 등 취약 건축물 조사 등 화재안전 업무 - 굴착 철거 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등 공사장 안전 업무

※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
3. 응시 자격

- 공통 응시자격 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 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"협회"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)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-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(복수국적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)

- 지역·성별·연령 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○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※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응시자격 요건
건축사 (시간선택임가제 나급)	건축법 제87조의 2(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)에 따라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'건축사'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건축시공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 기술사, 지질 및 지반기술사 (시간선택임가제 나급)	건축법 제87조의 2(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)에 따라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'건축시공기술사' 또는 '지질 및 지반기술사' 또는 '토질 및 기초기술사' 이거나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·지질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관련분야 실무경력 : 건축시공, 건축감리, 건축설계, 구조설계, 안전진단 등 건축 안전 관련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경력	

※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임가제, 한시임가제의 경우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)

4. 근무조건

○ 계약기간 :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(2년단위, 최대 5년 범위내에서 연장가능)

○ 근무시간 : 1일 7시간(주 5일, 35시간, 월요일~금요일 09:00 ~ 17:00)

※ 근무시간은 최종합격자와 협의 후 확정

○ 보 수 :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	주35시간(하한액적용)
시간선택임가제 나급	54,132천원	47,366천원	47,366천원

※ 연봉 외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 등의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가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
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4. 1(월) ~ 4. 8(월),〈09:00~18:00〉 12:00~13:00 제외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 ※ 퀵서비스, 택배 등을 통한 접수 불가
※ 등기우편 접수는 **접수 마감일 소인분(빠른 등기)까지 유효함**(☎ 02-2627-2312로 도착여부 반드시 확인)
- 접 수 처 : 금천구청 건축과
 - 주 소 : (08611)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, 2층 건축과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 **붙임2 제출서류 양식**을 출력하여 사용
- ※ 금천구 수입증지(1층 통합민원실, 우편접수 시 통상환증서 동봉)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※ 우편접수에 한해 “응시번호”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통보하고,
“응시표”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

○ 시험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면접시험		면접합격자 발표
	일시	장소	
2024. 4. 15.	2024. 4. 22.	금천구청 다목적실(지하1층)	2024. 4. 23.
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
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가. 1차 시험(서류전형)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
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
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
- ※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
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·시행

나.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
에 필요한 능력 등 평가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
- ※ 평가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
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
- ※ 평가방식 :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·응답
-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다. 면접합격자 발표

-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
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등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.
- ※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임용기관(근무예정부서)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 이후 시행됨.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(첨부1) 1부

- 응시수수료(7,000 원)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

- ※ 구입장소 : 금천구청 1층 통합민원실 / 우편접수 시 통상환증서(우체국 판매) 동봉
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이력서(첨부2)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○ 자기소개서(첨부3) 1부

○ 직무수행계획서(첨부4) 1부

○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5) 1부

○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(첨부6) 1부

○ 주민등록초본(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○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(석사이상) 또는 학위증명서 1부 [해당자]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- ※ 사본제출 가능(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
○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(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)를 정확히 기재(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 확인자 서명, 연락처 포함)
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
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
[별지서식 8]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 추가 제출

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* 최종합격자의 경우 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
- ▶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▶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),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류* ①, ②모두 제출하고 경력 입증이 어려울 경우 다른서류(근로계약서, 업무분장내역, 인사기록카드 등)도 함께 제출
- * 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개 선택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)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. 단,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임기제공무원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적용을 받습니다.
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고합니다.
- 임기제공무원은 임용기간 중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합니다.(송달비용은 청구인 부담)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▶ 금천구청 건축과 (☎ 02-2627 - 23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**
- 1. 직무기술서 1부
 - 2. 제출서류 양식 1부

직무기술서(예시)

채용 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기술직군(건축안전분야)	시간선택임기제 나급	2명

근무예정부서
금천구청 건축과

주요 업무	○ 건축물 안전검토 및 점검 - 건축 인허가 관련 안전기준(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등) 검토 및 지도·점검 업무 - 소규모 건축물 및 제3종시설물 등 노후건축물 점검·관리 업무 - 위험공정(건축물 철거 및 굴토 공정) 특별 안전점검 업무 등
-------	---

필요 역량	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 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-------	---

필요 지식	○ 건축도면 해석 및 검토 지식 ○ 토질·지질 또는 건축시공 관련 교육·경력 및 전문 지식 ○ 건축물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제반지식 등
-------	--

응시 자격 요건	관련분야 : 건축안전(건축사)
	건축법 제87조의 2(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)에 따라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‘건축사’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(관련분야 실무경력) : 건축시공, 건축감리, 건축설계, 구조설계, 안전진단 등 건축 안전 관련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경력

응시 자격 요건	관련분야 : 건축안전(건축시공기술사, 토질 및 기초기술사, 지질 및 지반기술사)
	건축법 제87조의 2(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)에 따라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‘건축시공기술사’ 또는 ‘지질 및 지반기술사’ 또는 ‘토질 및 기초기술사’ 이거나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·지질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(관련분야 실무경력) : 건축시공, 건축감리, 건축설계, 구조설계, 안전진단 등 건축 안전 관련분야의 실무참여 또는 정책연구 업무 경력